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우 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전화 (02)536-9855 ~ 6 FAX (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전화 (02)263-3598

제3권 제12호 통권30호

12

1997

축산물가공처리법 의결에 따른 축산식품관리업무 일원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제185회 정기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입법으로 성안된 후 지난 11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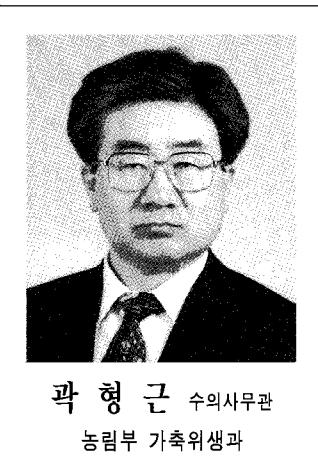
국회에서 개정후 심의·의결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12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며 법이 공포되면 6개월이내에 시행령·시행 규칙과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등 각종 고시 등을 재·개정한 후 98년 6월 중순경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명이 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85년 축산물가공업부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기 이전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도축(계)장 등의 인·허가관리형태가 작업장의 설치 허가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던 것에서, 영업의 허가(또는 조건부 허가후 조건이행의 신고)를 받도록 변경되었으며, 품목허가도 품목제조보고로 완화되었고

셋째, 지금까지는 도축(계)업, 집유업 및 용기 등 제조업만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허가사항이나, 앞으로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축(계)업·집유업·축산물 가공업 및 축산물보관법이 허가(또는 조건부 허가후 조건이행의 신고)사항이 되며,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용기 등 제조업이 신고사항이 된다. 따라서 농림부관리업무이던 용기 등 제조업이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되며, 허가사항인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법과 신고사항인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



곽 형 근 수의사무관
농림부 가축위생과

판매업이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로부터 농림부(축산가공처리법)로 이관되게 되며

넷째, 축산물의 범위가 현행 수육 및 원유에서 식육(수육)·원유·식품 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으로 확대되고

다섯째, 축산물작업장의 범위도 도축(계)장 또는 집유장에서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 보관장으로 확대되며

여섯째, 현행 식품위생법 소관인 식품판매업소 중 식육판매업소·식

육부산물 전문판매업소·우유류판매업소·축산물 수입판매업소가 앞으로는 축산물판매업소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영업 신고대상이 되며

일곱째, 도축(계)장등 작업장에서는 축산물검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의사 자격이 있는 자 외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를 검사보조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개정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과 각종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등 시행세칙을 제·개정해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연구기관뿐 아니라 관련 업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폭넓게 참여토록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관리업무 일원화가 우리 축산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더욱 높여 나감으로서 소비자의 사랑과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축산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새로운 각오를 당부 드린다.